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

제 정 : 2021. 8.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칙 제43조(졸업과 학위) 및 학사내규 제72조(졸업사정·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규정한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사내규 제70조(졸업의 기준)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학기의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격) 학사학위취득 유예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록학기: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2.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후 종강일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제4조(신청절차 등)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매 학기 수업일수 3/4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졸업사정을 통하여 승인한다.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은 당해 학기 종강일까지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 졸업자로 처리한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제5조(수강신청 및 성적)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중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기 수강한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수강신청 철회는 학사내규 제58조(수강신청 철회)에 따른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취득한 성적은 전체 평점 평균에 반영되나, 졸업석차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6조(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제정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